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기념 토론회

# 탈시설 흐름 속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도전과 과제

일시 2021. 4. 28.(수) 15:30~17:30

장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5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3주년 기념 토론회

# 탈시설 흐름 속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도전과 과제

일 시 2021. 4. 28.(수) 15:30~17:30

장 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5층)



# 탈시설 흐름 속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도전과 과제

- 일시: 2021. 4. 28.(수) 15:30~17:30
- 장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5층)  
※ 유튜브(국가인권위원회) 및 페이스북(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온라인 생중계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내용

좌장 : 김보영(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시 간	내용	발표자
15:30~15:40 (10')	개회 및 인사말	손두진(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5:40~16:00 (20')	<b>[기조발제]</b> 장애인 탈시설 정책 동향 : 기존 시설의 변환방안을 중심으로	박숙경(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6:00~16:30 (30')	<b>[사례발표]</b> 장애인거주시설 변화를 위한 움직임과 고민	김정하(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윤제원(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원장)
16:30~17:10 (40')	<b>[토론]</b>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과 제언	허미연(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장) 장영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강성봉(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사무국장) 박원식(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장)
17:10~17:25 (15')	종합토론	
17:25~17:30 (5')	마무리 및 폐회	



# 목 차

## [기조발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동향 : 기존 시설의 변환방안을 중심으로** ..... 3  
 박숙경(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사례발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권리”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탈시설 추진 사례** .. 19  
 김정하(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장애인거주시설변화를 위한 움직임과 고민** ..... 31  
 윤제원(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원장)

## [토 론]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변화에 대한 고민과 제언** ..... 43  
 허미연(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장)

**탈시설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 ..... 50  
 장영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청암재단 거주시설 변환사업 계획안과 그에 따른 쟁점** ..... 53  
 강성봉(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사무국장)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 62  
 박원식(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장)



기조발제

# 장애인 탈시설 정책동향 : 기존시설의 변환방안을 중심으로

박숙경(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장애인 탈시설 정책동향 : 기존시설의 변환방안을 중심으로 1)

박숙경(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1. 서론

서구 및 북미 국가들에서는 시설에서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정상화 이념이 정립됨에 따라 1960년대부터 이미 대규모 시설들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종류 및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규모 시설의 폐쇄는 이미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sup>2)</sup>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시설 변환 논의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4~50년가량 뒤늦은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9조에서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being included)’에 관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19조는 협약의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주시설의 수를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 시설을 운영하던 법인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연구진들은 ‘기존 시설 변환 국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사례검토, 국내 탈시설 추진 법인 사례연구, 전문가 및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

1) 이 글은 2018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던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 중 필자가 팀장을 맡아서 진행했던 3팀과제 ‘거주시설 변환방안’에 대한 정진번호사(법무법인지평), 김용진번호사(사단법인 두루)와의 공동 작업을 요약한 것이다.

2) Jim Mansell & Kent Ericsson(1996), 『Deinstitutionalisation and Community Living Intellectual disability services in Scandinavia』, Britain and the USA.

이 글은 이 연구를 진행한 나와 정진번호사(법무법인지평), 김용진번호사(사단법인 두루)의 공동 작업을 요약한 것이다.

## 2. 용어사용

우선 용어의 합의와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 : 전환(transfer)
- ② 시설이 탈시설화 된 형태로 전환 : 변환(transformation)<sup>3)</sup>

## 3. 연구결과

### 1) 해외 시설폐쇄 사례연구

본 연구진은 국가주도로 단기간에 민영시설을 대상으로 탈시설을 추진해야할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민영시설 폐쇄 과정’과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지원 아래 국가주도로 탈시설을 추진 중인 동구권국가중 하나인 ‘크로아티아 사례연구’, 가장 앞선 제도로 평가되는 사회통합법과 재정통제 방식으로 변환을 추진한 ‘캐나다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 미국 & 캐나다 : 거주서비스 기준 강화, 재정 통제를 통해 자체적 변환 유도
  - 핵심은 ‘탈시설화된 주거서비스 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 강화, 적용 유예기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 중단.’<sup>4)</sup>

---

3) 서울시 2차 탈시설추진계획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변환은 탈시설 추진과정에서 기존 시설들이 구조적으로 축소, 폐쇄(지),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란 의미에서 영어의 Transformation를 한국어로 표현한 것이다.

4) 국공립시설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설 폐쇄와 지역사회로 거주인을 이전해왔다. 따라서 국공립 시설들은 거의 문을 닫았으나 민영시설의 변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미국은 2014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다 강화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 이하 HCBS)’ 기준 발표,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9년부터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재정 지원 중단. (이에 따라 그룹홈 형태의 시설들이 모여 있는 캠퍼스형 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집단 생활이 이뤄지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중단된 상태다.)
-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법’ 제정. 법에서 허용하는 주거지원 유형을 ‘집중지원주거, 공동생활지원주거, 위탁가정주거, 자립생활주거’로 구분하였고, 최대 3인 이하, 지역사회거주를 기반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자금지원 중단이나 운용권한 철회(미국과 마찬가지로 재정 통제를 통해 탈시설화된 서비스 질 유지)

○ 크로아티아 : 유럽연합 및 국제 NGO단체의 지원 + 국가 주도 탈시설 추진

- 크로아티아의 탈시설은 1997년 시민사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한 이후, 2010년대에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탈시설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사회복지 거주시설 및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법인의 탈시설 및 변환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2014년에는 그에 대한 운영계획이 마련되었다. 동 계획에서는 기존시설의 변환 형태로 입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집중적인 장기 돌봄 주택, 폐쇄가 제시되었다.

## 2) 민간사회복지법인의 탈시설추진 사례 연구

-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 기반 거주 또는 탈시설을 추진해 온 장애인거주시설과 법인들의 현황과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6개 민간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법인의 탈시설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인관계자 또는 시설장을 인터뷰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별 탈시설 추진 현황, 거주인 자립 지원 및 탈시설 추진 동기와 과정, 추진과정에서 도움이 된 자원,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과정, 탈시설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 탈시설 추진 유형은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정상화원리에 따라 설립 초기부터 탈시설을 추진해온 경우(동천의 집, 엠마우스의집, 다솜)
  - ② 문제시설에 대한 구성원들과 시민단체의 민주화운동을 통해 관선이사들이 파견되어 탈시설을 추진해온 경우(프리웰, 청암재단)
  - ③ 법인의 운영자가 교체되면서 경영 및 서비스 혁신에 의해 탈시설을 추진해온 경우 (SRC보듬터)
- 탈시설 추진 동력은 ‘법인의 지지와 동의, 사람들 사이의 애정과 정상화원칙, 시설구성원의 민주화운동, 자립생활 및 탈시설운동, 서비스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영혁신, 지자체(공무원)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도움이 된 자원은 ‘탈시설 이후 거주인의 달라진 삶과 이로 인한 거주인과 직원들의 인식변화, 지자체의 탈시설정책과 일부 선도적인 공무원의 지원, 자립생활센터와 탈시설운동 단체의 협력과 요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재단 지원’으로 나타났다.
-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와 요구는 ‘대체 서비스의 부족문제 해결, 경직된 제도와 행정 개선, 공공화에 대한 의지 부족 해결, 직원 감원과 근로자성 및 노동조건 보장 문제 해결, 인프라와 자원이 크게 부족한 농어촌 지역 문제 해결, 사업축소 또는 폐지로 인한 법인 운영자들의 부담 완화 및 해결, 모태 시설을 닫는 불안함 이해, 재원 및 재산처분상의 어려움 이해 및 해결, 거주인들의 정보부족과 두려움 이해 및 지원, 가족들의 정보부족과 두려움 이해 및 지원, 왜곡된 탈시설 추진 방지, 그룹홈 거주인을 위한 탈시설 지원체계 필요’ 이상 12가지로 나타났다.

### 3) 탈시설추진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 탈시설 추진 관련 법인과 시설들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탈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사회복지학자 2인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다. 인터뷰는 탈시설정책에 대한 견해, 시설의 협력유인 및 탈시설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표 1〉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결과

주제	내용
탈시설 정책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핵심</li> <li>• 지금까지는 민간이 담당. 국가가 주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li> <li>• 탈시설을 시설에서 그룹홈으로 옮기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li> <li>• 현재의 4(거주인수):1(직원수) 그룹홈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li> <li>• 정부가 탈시설 그랜드플랜을 마련해서 추진</li> </ul>
직면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오던 법인과 시설들이 당혹스러울 것</li> <li>• 정부가 시설들을 상대로 탈시설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견인</li> </ul>
협력유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선제적 추진 압박, 협력하는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유도</li> <li>• 시설폐쇄 용어와 전략보다는 거주다양화 정책의 측면에서 접근</li> </ul>
사업 전환, 법인해산 관련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근과 채찍 병행(문제 시설은 강력하게 법인해산 및 시설폐쇄 추진,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정부가 방향과 기준 제시, 유예기간을 주어 자체적 변환 유도)</li> <li>• 대부분 변환을 희망할 것이므로 변환의 방안을 열어놓고 추진</li> <li>• 오래전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법인 재산의 상당수는 해방 후 무상불하 받은 적산가옥, 정부지원과 후원에 의해 형성된 자산임. 해산 후 법인재산 보전은 깊은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과제로 연구 필요</li> </ul>
기존시설 변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으로 추진.(거주시설이 만들어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겪어 온 것을 고려)</li> <li>• 낙후되고 노후한 시설들은 위험하므로 폐쇄</li> <li>• 시설에서 나오게끔 하는 유인책과 지원정책이 지역사회 보호체계와 지원체계 강화와 동시에 갈 수 있도록 속도조절</li> <li>• 거주시설들과 종사자들의 노하우 활용</li> </ul>
입소제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li> <li>• 아동부터 적용. 단, 가정위탁제도가 안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장</li> </ul>
기타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거주서비스의 핵심이 되어야 함</li> <li>• 중증 의료 케어 필요자를 위한 의료기반주거서비스 제공</li> <li>•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을 복지관 등 복지영역으로 담당하고 있음. 보건 분야 케어 강화 필요.. 현재의 서비스와 전문가들의 실력 검증 필요</li> </ul>

- 탈시설 추진 관련 종사자들이 직면한 실태와 정책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종사자 FGI를 실시하였다. 탈시설 추진 중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3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시설직원들의 권익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 담당자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종사자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결과

주제	내용
탈시설 개념 및 용어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과 자유,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삶을 주거서비스 핵심가치로 제언함</li> <li>• 국가가 탈시설개념을 정립하여 혼란을 줄여야함</li> <li>• 용어를 부드럽게 사용하기바람, '시설폐쇄'란 용어는 현장에서 불안을 초래함</li> </ul>
탈시설 추진관련 종사자들의 반응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시설 추진 상황에 대한 선언을 넘어선 정부주도의 구체 방안 마련 시급</li> <li>• 탈시설 지지자와 반대들이 혼재하며 다양한 의견 존재</li> <li>• 불안과 혼란, 폭풍전야 같은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li> <li>• 시설직원 고용연계 방안 제시 필요</li> </ul>
종사자 노동권 보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책임성을 높여 정부가 일정정도 공공일자리로 수용하는 방안'과 '지역 사회 기반 대체서비스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두 가지 견해 존재</li> <li>• 거주시설과 탈시설주거서비스 노동조건이 격차가 큼. 동등하게 조정</li> <li>• 거주시설의 현행 지원인력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여 탈시설 추진과정에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직원 감원 부담 완화</li> </ul>
탈시설 지원인력 양성 및 훈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시설직원의 경험 활용</li> <li>• 기존의 관련 자격증 및 경력 + 특화된 교육 병행</li> <li>• 탈시설 지원인력 교육과정에 담길 내용들(개별화된 지원, 자기결정권 보장, 사람중심 지원, 인권 교육, 이용인의 정서안정을 돕고, 도전행동 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건강 및 의료지원을 위한 기본 내용)</li> <li>• 행정직·기능직은 대형화된 시설보호 구조에서 필요한 인력들로서 탈시설 이후 노동연계가 어려움. 별도 대책 필요. 기존 시설을 재활병원 또는 의료집 중지원시설로 전환할 경우 일부수용 가능</li> </ul>
기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점을 장애인당사자 지원에 맞추고 운영자와 종사자문제는 후속 과제로 가야함</li> <li>• 노령거주인을 고려한 탈시설 지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 필요</li> <li>•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필요</li> <li>• 탈시설 추진 반대과정에서 탈시설 추진 법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필요</li> </ul>

#### 4) 법률적 정책적 개선방안

- 시설 폐쇄의 헌법적 한계 검토의견
  -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설변환 단계에서 위헌 논의를 피하기 위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최소제한, 비례원칙, 법률에 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감액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기존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정부의 의무 혹은 시설의 권리가 아니므로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가능. 다만 탈시설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법인의 변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서비스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장애인복지법 58조 또는 시행령 개정안 제시)
  - 기본재산 처분 절차의 개선 (보건복지부가 탈시설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의 시기 및 처분 범위,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의 용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주무관청의 혼선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목적사업 전환을 위한 정관 개정 허가기준 마련(탈시설을 위한 목적사업 전환을 위한 정관변경 과정에서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특례 기간 동안 각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목적사업을 수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자산 매입 검토(사립학교법인 해산 시 국가가 기본재산 중 일부를 직접 매입하므로 원용 가능. 단, 시설운영법인의 자산형성과정에서 공공자산으로 인한 자산 형성분(보조금, 후원금, 무상불하 받은 적산가옥 등)에 의한 자산 형성 효과 고려가 필요함)
  - 법인세 감면을 위한 혜택(지역사회주거서비스 제공기관도 기존 시설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 목적사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현행법제하에서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 해산을 선택하는 법인을 위한 법제 개선
  - 해산사유의 특례신설(사회복지사업법, 민법상 비영리법인 해산 사유가 한정되어 탈시설을 위한 해산 시 사유 신설 필요)
  - 잔여재산의 처리 지원
  
- 시설직원의 고용 방안
  - 인력 개편을 위한 해고 가능 여부(시설 변환의 사정만을 이유로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정리해고 가능 여부(해당가능성은 있으나 개별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최대한 고용연계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후조치
  - 정부는 탈시설을 위해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5 제2항)
  
-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한 법제 마련
  -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예방 및 보조금 지급 여부 등 제재조치를 위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흡함. 장애인복지법 62조 제1항에서 문제발생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시설의 문제를 찾는 방식의 조사를 수행할 의무는 없음.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이제까지 실질적인 평가의 기능을 하지 못했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일관된 공적 평가가 이뤄져서 제재조치 및 인센티브와 연동된 변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평가 강화 관련 법률 검토의견 제시(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설조사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5. 핵심 추진 과제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결과 국가 주도의 탈시설 추진 계획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팀은 단기간에 국가주도로 민영시설들의 탈시설을 추진해야 할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크로아티아와 미국 2개 국가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유럽연합은 크로아티아 등 탈시설이 추진되지 못한 일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EU기금 지원 조건과 연계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국가 주도의 탈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거주서비스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민영시설들이 자체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팀은 국내 탈시설 추진상황 및 기존 시설의 변환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탈시설 추진 법인 사례조사와 전문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와 법인 및 시설들에서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대부분은 탈시설 추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고 국가 주도로 탈시설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의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여 탈시설이 원활하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은 기존시설의 변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탈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유의점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과 법률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기존시설의 변환 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추진방향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탈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인 크로아티아 사례를 참조하여 기존 시설들의 운영 현황, 운영자의 의견, 서비스 질과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기존 시설들의 구조를 변환한다.

- ① 지역사회 기반 탈시설 거주서비스 제공 기관
- ② 집중 의료 및 돌봄 지원 주택
- ③ 폐쇄 또는 폐지(문제시설의 경우)

이 과정은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 추진 방법은 미국의 민영시설의 탈시설 추진 모델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서비스 기준 제시(적용기간 유예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 및 변환할 수 있도록 유도)
- ② 개별 시설별 변환 계획 수립 의무화 컨설팅 제공
- ③ 평가실시
- ④ 최종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

### 3) 핵심 추진 과제

#### (1) 변환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컨설팅 실시

기존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탈시설을 목적으로 변환을 추진하도록 ‘탈시설 추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복지부 산하에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기존시설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용이하게 변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산하에 ‘탈시설 철학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변환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개별 시설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환 계획 수립 컨설팅 서비스는 법인과 시설들이 탈시설 방향을 왜곡하지 않고 시설 입지와 구조, 자산 등을 활용한 변환을 추진하도록 직접 지원하므로써 적은 비용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방안 중 하나다.

변환컨설팅 팀은 법인과 시설들을 상대할 수 있는 권한부여와 실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컨설팅 각 내용마다의 지킴, 제도 틀을 마련한 뒤, 철학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해 권한을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2차 탈시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시했던 컨설팅 경험을 참고하여, 최대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할 필요가 있다.

- ※ 변환컨설팅 내용**
- 거주인의 개인별 탈시설 전환 추진 계획
  - 종사자 고용 연계 계획
  -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변환 계획
  - 시설 건물 및 기본 재산 처리 방향 및 방안
  - 정관변경 등 탈시설 추진 관련 제규정 변경
  - 기타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등

## (2) 탈시설 추진 의무 부과 및 보조금 감액 등 감축 방안 추진 검토

시설운영을 계속하는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매년 일정비율 감액하여 정원을 축소하고 탈시설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는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를 제외하고 추진해야 실제적인 탈시설 추진 효과가 있다. 또한 신규 입소 제한조치와 같이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입소 제한 조치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 (3)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거주서비스' 규정 신설 및 적용 검토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복지법에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이하, HCBS)'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한다. 이 조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서울시 등 일부자치체에서 시행되어 온 탈시설정책과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기존 시설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단계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HCBS를 참조하여 거주서비스 기준을 강화하여 탈시설화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적용 유예기간을 둔 뒤, 2030년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달한 시설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 (4) 비자발적이거나 불필요한 기존시설 입소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자발적이거나 불필요한 시설 입소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 역시 부재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이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 거주해야 한다는 원칙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원칙을 이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실제 비자발적이거나 불필요한 입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소적격성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이미 비자발적이거나 불필요하게 기존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문제시설 우선 단기 변환**

기존 시설들 중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대규모인 경우,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가 낙후되어 개선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폐쇄 대상 시설로 지정. 일정 기간 자구 개선이 이뤄지지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폐쇄 결정. 이를 위해서는 시설환경에 관한 일제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대학 구조조정의 예를 참조).

### **(6) 소규모 거주시설 변환**

소규모시설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탈시설화 된 거주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변환되도록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자립체험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간단계 자립주택, 24시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최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자립주택, 미성년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거주시설로 전면 변환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직원상주형 지원주택으로 변환할 경우 현행 1:4로 된 인력지원기준을 개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직원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근무를 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탈시설화 된 거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주택은 1인 1실을 갖추도록 기준을 변경하되 일정기간 적용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 기관이 자발적으로 기준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 **(7) 탈시설을 위한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

법인과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변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처분 등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위의 법률검토 참조).

## (8) 기존시설 인력기준 현실화(한시적 조치)

현재 2교대 기준 4.7:1로 되어있는 거주시설의 인력기준을 3교대 등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현재의 기준으로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탈시설 추진과정에서 기존 시설들이 정원축소로 인한 직원 티오가 줄어드는 데 따른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전문가 및 운영자, 종사자 모두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 인력기준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탈시설 추진 기간 동안 병행될 기존 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탈시설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원 강도가 높은 거주인들이 남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단, 이 조치는 탈시설을 통한 거주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탈시설과 기존 시설 변환이 완료되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 조치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9) 기존시설 직원 노동연계 및 주거생활 지원인력으로의 전환 지원

국가가 민영 시설직원의 고용을 연계해주어야 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와 책임은 없다. 그러나 탈시설 추진에 따른 직원 고용 연계는 중요 정책적 변화와 연계된 것이고, 기존 시설 운영 법인과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법률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탈시설 추진과 직원 고용 연계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의 법률 검토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조하여 ‘기존시설들이 변환을 통해 자체적으로 산하 시설 직원 고용연계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0)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 기반 거주서비스 종사자 처우를 균일하게 개편

본 연구 결과 기존 시설직원들이 탈시설화 된 거주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또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화 된 거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급여나 노동안정성 등 탈시설화 된 거주서비스 지원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자립주택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 인력의 노동조건은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동일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인력의 노동조건이 그 자체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기존 시설들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변환과정에서 신규서비스로 재배치될 경우 동일한 노동조건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성도 높다. 이를 고려하여 신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거주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균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11) 행정직과 기술직 고용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활성화

대규모 거주시설의 기술직(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전기사)의 경우 대규모 시설 구조로부터 파급된 일자리다. 따라서 변환과정에서 고용연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외 및 국내사례 연구 결과 기술직 종사자 고용연계는 법인이 기존시설을 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여 재배치하거나 의료돌봄집중시설로 전환할 경우 일부 재배치가 가능했다. 또한 현재 탈시설장애인이 이용할 의료 및 심리치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관과 지역사회병원 등에서 탈시설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지원서비스와 치료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술직, 행정직 종사자들의 신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절벽 끝으로

“절벽 끝으로 오라.”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절벽 끝으로 오라.”

“할 수 없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갔고,  
그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

나는 날아올랐다.

크리스토퍼 로그

## 사례발표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권리”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탈시설 추진 사례

김정하(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 장애인거주시설 변화를 위한 움직임과 고민 - 인강원 거주시설 변환사업 중심 -

윤제원(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원장)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 권리”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탈시설 추진 사례

김정하(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이사)

## 1 추진 배경

-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개발 권고 이행
-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42번)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 이행
- 서울시 2017년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발표, 2019년 서울장차연과 서울시 프리웰산하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추진을 약속. 2019년 향유의집, 2020년 누림홈과 해맑은 마음터에 대한 변환추진을 약속함.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회(2019년 2차 임시이사회, 2019.5.30.)에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 및 변환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함.

## 2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추진 원칙

- (장애인) 더 나은 삶의 질 보장
  - 최대서비스의 보장의 원칙
  - 주거공간은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이전(서울시지원주택조례 및 지원주택사업)
  - 장애인지원주택은 1인 1실, 1가구 1~2인 거주, 최대한 분산형(권역당 10인 이하 거주)

- 초기정착을 위한 24시간 서비스 보장 (지원주택서비스, 탈시설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추가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기초생활수급 보장, 자립정착금 지원 등)

### ○ (직원)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

-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직원에 대한 평가 및 재교육을 통해서 지원주택 코디네이터로 업무 전환,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고용조건을 유지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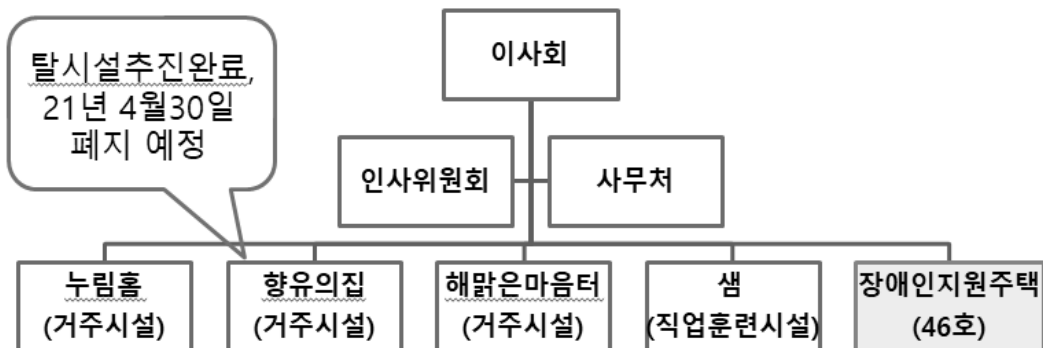
### ○ (복지전달체계) 공공화의 원칙

- 향후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공공화의 원칙으로 법인산하 서비스기관은 공공에 이관하고 법인청산절차를 밟을 예정임.

## 3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재단)의 개요 및 역사

- 설립일자 : 1981년 10월 21일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길 24
- 비전 : 인권, 탈시설, 자립생활
- 임원구성 :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공공이사 5명, 외부이사 2명
- 산하시설 :



## ○ 법인의 역사

- 1981년 서울시 강서구에서 ‘석암재단’이름으로 시작(설립자 이부일), 88올림픽을 앞두고 1987년 경기도 김포시로 이전, 2007년 감사 당시에 6개 시설 운영(장애인시설4, 노인시설2)
- 2007년 서울시특별감사로 5개 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 (한빛맹아원, 인강원, 산하시설 시설은 재정상조치사항 17건(823,862천원)을 포함하여 40개의 감사처분 받음.
- 그러나 서울시특별감사 시에 법인 설립자와 일가는 회계장부를 차량트렁크 및 재활치료실 등에 감추고, 직원들을 협박함. 장애인수당 횡령, 식자재비 허위 청구, 설립자가족의 허위근무, 장애인가족에게 영구입소비 명목으로 갈취, 장애인을 양자로 등록 후 재산은닉 등 갖은 횡령과 인권침해 자행.
- 2007년 시설거주인과 직원들의 공익제보로, 2008년 설립자 이부일은 구속 수감되어 형사처벌, 일가와 동조자들도 형사처벌 받음.
- 2008년 임시이사회가 구성되었지만, 구 비리법인측 임시이사들의 방해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비리일가에 대한 손해청구 등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3년까지 두 차례의 임시이사회 해산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 2013년부터 정이사회가 꾸려짐.
- 2013년 정이사회는 법인의 비전을 인권, 탈시설, 자립생활으로 설정하고 법인산하 시설의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함.



[사진 설명 : 2008년 석암비대위(시설거주인 조직)는 이부일 등 설립자 일가의 비리에 분노하여 이들을 고발하고, 서울남부검찰청앞에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탈시설 추진 역사

- 2009년 석암재단의 비리를 제보하고, 비리척결을 위해 싸우던 시설거주인들의 단체인 ‘석암비대위’는 비리세력을 쫓아내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신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시설에서 살수 없다’며 마로니에 노숙농성을 시작, 서울시를 대상으로 탈시설정책마련을 요구.



[2009년 마로니에8인의 투쟁으로 서울시 탈시설정책이 전국최초로 만들어졌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탈시설정책 약속을 지키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마로니에 8인’의 투쟁으로 불리는 이 투쟁으로 전국 최초로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됨.
- 법인 자체적으로는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통한 지원주택사업을 시작하고, 2017년 SH공사의 지원주택 시범사업에 참여
- 2019년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46개의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법인이사회에서 탈시설 비전 및 목표 확인, 2019년 법인이사회에서 탈시설추진 의결, 법인산하 거주시설 3개소에 대한 탈시설추진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지원주택으로 자립한 경우는 총 76명임.
- 2021년 4월 30일자로 거주인의 탈시설 추진 목표를 완료한 향유의집 폐지 예정.



[사진 설명 : 2009년 ‘더 이상 시설에서 살수 없다, 탈시설권리 보장하라’며 석암재단의 비리와 맞서싸우던 시설거주인 8명, 이들을 마로니에8인 이라고 부른다]

## 4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기관 현황

### 1. 시설현황 및 소재지

시설명	주소	시설구분
향유의집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64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누림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중앙로 83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해맑은마음터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중앙로 8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샘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길 24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프리웰 지원주택	양천구 2권역, 구로구 2권역, 동대문구1권역 (총5개 권역)	장애인지원주택 46개소

#### ○ 향유의집 탈시설추진 후 시설폐지

- 향유의집은 2021년 3월 9일자로 모든 거주인이 이전하였고, 행정 및 시설물에 대한 사업 종료 처리 중이며, 2021년 4월 30일자로 폐지 예정임.

### 2. 거주시설 세입세출 및 정부보조금 비율 (2020년 기준, 단위:천원)

시설명	세입			세출		
	총계	보조금	비율(%)	총계	인건비	비율(%)
향유의집	2,554,201	2,450,000	95.9	2,554,201	2,117,339	82.9
누림홈	2,562,144	2,450,305	95.6	2,562,144	2,141,104	83.6
해맑은마음터	3,402,929	3,207,336	94.3	3,402,929	2,862,605	84.1
총계	8,519,274	8,107,641	95.2	8,519,274	7,121,048	83.6

#### ○ 시설거주인 1인 평균 보조금(국비+시비) 서비스 비용 단가

-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 약 50,000,000원 ~ 53,000,000원)  
(20년 1월 기준 향유의집 : 76,562,000원 / 해맑은마음터 : 52,579,000원)

### 3. 거주인 현황

시설명	정원	2018. 1월	2020. 1월 (1차 입주후)	2020. 10월 (2차 입주후)	2021. 4월 (3차 입주후)	연령(20.1월)		
						미성년	성년	만 65세 이상
향유의집	60	60	32	21	0	0	20	11
누림홈	70	58	49	39	39	0	46	3
해맑은 마음터	77	72	61	57	61	15	46	0
총계	207	190	142	117	100	15	112	14

시설명	정원	현원	수급여부(20.1월)		장애 (20.1월)		
			수급	비수급	신체	발달장애	발달+신체중복
향유의집	60	32	25	6	16	3	12
누림홈	70	49	45	4	3	18	28
해맑은 마음터	77	61	54	7	3	34	24
총계	207	142	124	17	22	55	64

○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원주택 입주 : 총 76명 (2018년.1~2021.4)

- 서울시장애인지원주택으로는 1차 입주 32명, 2차 입주 25명, 3차 입주 19명으로 총 76명의 자립을 추진.

○ 향유의집 탈시설 추진 결과(2018.1-2021.4)

2018년1월기준 현원	지원주택	사망	자립생활 주택	전원	원가정 복귀	김포지역내 자립
60	43	6	1	6	3	1

#### 4. 직원 현황 (2020년 8월 기준)

구분		총계 (현원)	향유의집		누림홈		해맑은마음터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15	32	32	36	37	47	46
직능별	행정직	15	5		5		5	
	생활재활교사	65	15		21		29	
	기능직	36	12		12		12	
자격증 소지여부	사회복지사	80	20		26		34	
	유사자격증	0	-		-		-	
	자격증없음	0	1		-		-	
거주지	서울	13	1		3		2	
	서울 외	100	31		34		44	
'20년 인건비세출기준 (시간외, 각종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 해당항목 포함/천원)		61,224	66,167		57,868		59,638	

## 5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탈시설추진 현황 (2018-2021.4월)

### ○ 법인의 핵심 미션 '탈시설' 명확화

- 2013년 법인이사회에서는, 2009년 석암재단의 비리척결을 위치던 장애인이 비리척결을 넘어 탈시설권리를 외친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이 결과로 만들어진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이 본격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본 법인 탈시설을 적극 추진할 것에 대한 목표를 세움. 법인의 목표로 '인권, 탈시설, 자립생활'로 비전을 세움.





-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SH공사의 지원주택 모델화 및 시범사업을 통해서 탈시설 장애인의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
- 2019년 법인이사회에서는, 탈시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향유의집을 비롯하여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 추진 사업을 의결함.

### ○ 자립 추진을 위한 개인별전환계획 수립 및 사전 준비 활동

- 2018년부터 향유의집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협업하여 장애인 52명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IL센터 동료상담가를 배치하고, 각 개인에 따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함. 장애에 따라, 상담, 정보제공, 사회활동 경험 증대, 자립한 사람들과의 동료상담, 자립한 동료집 방문 등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함
- 2019년에는 지원주택 입주를 목표로 각 개인별 지원주택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지원주택 제도에 대해서 거주인, 직원, 가족에게 설명회를 개최함
-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3년)으로 탈시설하여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탈시설 전단계, 이사단계, 이사후 초기단계, 정착단계를 나눠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 각 시설별로는 개인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이사할 주거지 방문, 살림장만 계획 수립 및 구입, 이사계획 수립, 활동지원서비스, 정착금,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지원 센터를 통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요청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신청함. 각 시설별로 퇴소 위원회 개최 및 무연고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양천구 장애인민관협의체에 퇴소 및 지원주택 이전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절차 거침.

### ○ 탈시설 준비 및 진행

탈시설 준비단계	이전 단계	초기정착 단계	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과 지원주택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안내</li> <li>- 사전에 탈시설 후 거주할 주택 방문</li> <li>- IL센터 및 지역내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li> <li>- 사회서비스(활동 지원, 공공후견, 주간 활동서비스, 평생 교육, 신탁, 자립 정착금) 신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절차 진행</li> <li>- 이사준비를 위한 계획 및 관련 예약</li> <li>- 활동지원사 매칭 및 계약 위한 사전 미팅</li> <li>- 가구 등 살림살이 구매 및 배송</li> <li>- 기존 서비스기관과의 신규 서비스가 관회의 진행</li> <li>- 이전 후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획 논의 및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지원 및 짐정리, 주거 상황 점검</li> <li>- 전입신고 및 기초 생활수급권 신청</li> <li>- 각종 사회서비스 신청 상황 점검</li> <li>- 활동지원서비스 및 유사서비스 이용 개시</li> <li>- 살림살이 장만</li> <li>- 식생활 (계획) 준비</li> <li>-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익히기</li> <li>- 지역사회 익히기</li> </ul>	<p>(본인 및 지원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상황 점검</li> <li>- 각종 사회서비스 점검</li> <li>- 교육, 일자리, 문화 여가생활 등 자신에게 맞는 낯생활 연계 및 진행</li> <li>- 건강관리</li> <li>- 금전관리</li> <li>- 의식주 기본생활 관리</li> <li>- 심리적 상황 및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li> </ul>

### ○ 향유의집 노동자 고용 승계 노력(2021.2월 기준)

구분	합계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사회재활교사	상담평가요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생활재활교사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촉탁 의사	관리인	운전원
정원	22	1	1	1	1	0	1	0	0	0	11	1	2	0	1	1	1
현원	30	1	1	1	1	1	1	1	1	1	14	1	2	1	1	1	1
고용승계 인원	11 (38%)	X	X	X	X	1	X	X	X	X	10	X	X	X	-	X	X

- 전체 직원 30명중 축탁의 제외한 29명. 이중 11명은 법인 내 타시설로 고용승계 8명, 타 법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로 고용승계 3명. 따라서 전체인원 대비 38%가 고용승계 되었고, 대부분 생활재활교사만 고용승계 됨.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고용승계 관련 노력 (정책 요구안중심 설명)

#### 1.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고용승계 후 전환재배치 방식 (스웨덴모델참조)

- 탈시설정책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육 후 관련 유관 직종으로 전환재배치 하는 방안
-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들은 급여는 정부보조금 100%로 지원되므로, 고용책임을 민간 법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공공적으로 성격전환 유도
- 사회서비스원에 고용승계가 어려울시, 별도의 체계하에 임시적으로 둔 후 유사 업종 중 정부기관으로 고용승계

#### 2. 서울시 직영, 위탁, 수탁기관에 고용승계 의무 부과

- 장애인지원주택 신규 운영사업자의 경우 탈시설정책으로 폐지되는 법인 및 시설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방식  
(서울시는 2020년 장애인지원주택운영사업자 모집시 신청자격요건으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사업자를 모집하여 3명이 고용승계 됨. 희망자는 6명이었으나 고용승계 책임부과에 대한 운영사업자의 반발로 50%만 승계됨)

#### 3. 공기업의 희망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 퇴직위로금 지급 방식 도입

## 6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탈시설추진 평가 및 이후 계획

#### ○ 공공이사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프리웰 법인의 성격적 측면에서 탈시설 추진의 강점

- 운영책임자인 법인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진행되므로, ‘목표지향성’이 분명
- 준비단계, 이전단계, 초기정착단계,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이전’을 추진

- 탈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족의 참여 및 직원의 동의 과정의 어려움 존재
- 일부의 직원이라도 고용보장의 노력 시도
- 공익이사 이사회 구성으로 법인의 공공적 성격 유지, 정부정책 연동하여 진행



[사진 설명 : 2019년 12월 2일, 김포시 소재 향유의집에서 서울시지원주택으로 이사 가는 19명의 장애인들이 이사를 위한 리프트버스 앞에서 마지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서울시지원주택 제도를 통한 탈시설추진으로 안정적 이주 진행

- 지원주택의 서비스 안전성, 영구성, 부양 부담해소,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서비스라는 장점은 탈시설권리 실현을 위한 토대

-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본인과 가족의 탈시설 선택에 용기를 제공
- 탈시설정책 이행이 지원주택의 공급량에 의존
- 각종 사회서비스권리와 연동되어 있어, 기반확대 필요

### ○ 공공법인적 성격의 프리웰법인이 추진한 탈시설의 성과와 한계

- 과거의 비리 및 인권침해 재단의 공공화(공익이사회 구성)를 통해서 탈시설추진
- 탈시설 정책을 선도하면서 탈시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법인 위주의 한국사회에서 프리웰의 방식을 확대하는데 한계
- 프리웰 향유의집의 추진과정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대안제시 가능



[사진설명 : 대구장차연이 대구시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BS 뉴스 2021.4.20.일자 뉴스

“시설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중증 뇌병변 장애인 호영선 씨도 2년 전 시설에서 독립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일도 합니다.

[호영선/중증뇌병변장애인 : “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많이 했었죠. 막상 나오고 나니깐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노래를 듣고...

시설 밖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중증 장애인도 시설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사회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호영선 : “일할 수 있다는 장소가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아직 첫 봉급은 못 탔거든요. 타보면은 알겠죠. 나도 뭔가 할 수가 있구나.”]

서울시 주택 지원으로 시설에 수용돼 있다 독립한 중증장애인은 지난 3년 동안 80여 명.

대부분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느꼈고,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족관계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변화를 위한 움직임과 고민

## - 인강원 거주시설 변환사업 중심 -

윤제원(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원장)

“발달장애인들에게 탈시설-자립이란 결코 지역에 나가서 혼자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당사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병원을 가고 하는 등 시설에서 받았던 모든 도움을, 여럿이 모여 함께 생활해야 하는 시설이 아닌 발달장애 당사자자의 집에서, 당사자의 취향에 맞게, 당사자를 중심으로, 당사자가 선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보호자들에게 탈시설-자립을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개별의 선호도를 존중하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지만, 한명의 지원교사가 4~5명을 지원해야 하기에 거주이 개개인이 원하는 만큼 지원할 수 없고, 그때그때 바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리기가 힘든 발달장애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것이 함께 사는 다른거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동료 거주인에게 머리를 맞기도 하고, 방에서 조용히 퍼즐을 하고 싶는데 갑자기 다른 방의 거주인이 들어와서 맞추던 퍼즐을 흐트러 놓기도 합니다. 개인의 컴퓨터를 다른 거주인이 고장내기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가서 사온 새 옷을 다른 거주인이 가져가 입기도 하고, 그래서 사물함에 열쇠를 달아두지만 정작 당사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지만 같은 방에 사는 다른 거주인이 일찍 일어나 시끄럽게 하고 이불을 걷어치우기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tv를 보고 싶은 거주인에게는 다른 거주인들이 아직 자니까 좀 더 있다가 tv를 켜자고 합니다.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하지만 저마다 가고 싶은 곳이 달라서 모두가 함께 갈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고 다음에 가야 합니다.

이렇듯 시설은 여럿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견뎌야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힘든 일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지원 인력들도 힘든 일입니다. 한명이 여러명을 지원해야 하기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시설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거주인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이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집단생활 하도록 하는 지원방식이 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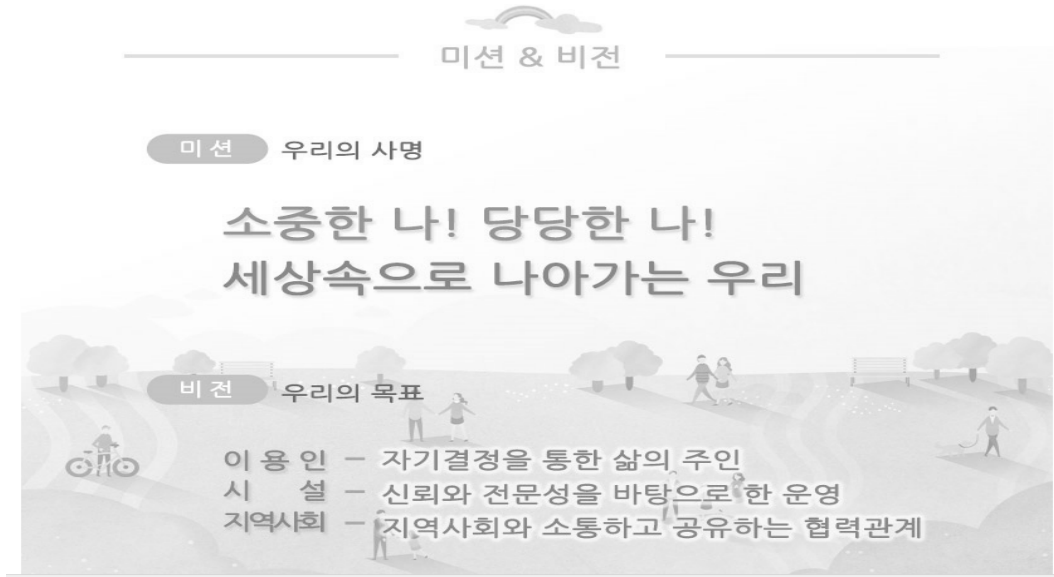
## 1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 인강원 소개

### 1.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연혁

- 1967년 11월5일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설립
- 1977년 1월28일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재설립 (명칭변경)
- 1997년 現 인강원 건물 재건축
- 2014년 구 법인 운영자 시설운영 비리 및 인권침해 등 형사처벌
- 2015년 9월, 서울시 공익이사 파견
- 2015년 11월~12월, 법인 및 시설 운영진 교체, 설운영 정상화  
(거주시설 2개소, 직업재활시설1개소, 주간보호시설1개소)
- 2016년 12월, 거주시설 송전원 폐쇄
- 2016년~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운영
- 2018년 10월, (구)서울 인강학교 공립화
  - ☞ 서울시교육청 기부체납에 의한 2019. 09 공립특수학교 (현)도솔학교 개교

## 2. 거주시설 인강원 현황



### 1) 거주인 현황 (정원 56명 / 현원 32명 - 2021.03.31기준)

#### ■ 장애별 현황

구분	계	지적장애	중복
남	16	16	
여	16	15	1
계	32	31	1

#### ■ 등급별 현황

구분	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남	16	11	5	0
여	16	11	4	1
계	32	22	9	1



### ■ 연령별 현황

구분	계	20~29	30~39	40~49	50세 이상
남	16	4	6	5	1
여	16	3	8	4	1
계	32	7	14	9	2

### 3) 종사자 현황

구분	계	원장	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상담평가요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간병인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안전관리인	운전원	서무
정원	31	1	1	1	14	1	1	1	1	1	1	1	3	1	1	1	1
현원	32	1	1	1	15	1	1	1	1	1	1	1	3	1	1	1	1

## 2 개인단위 탈시설-자립 진행

### 1) 탈시설- 자립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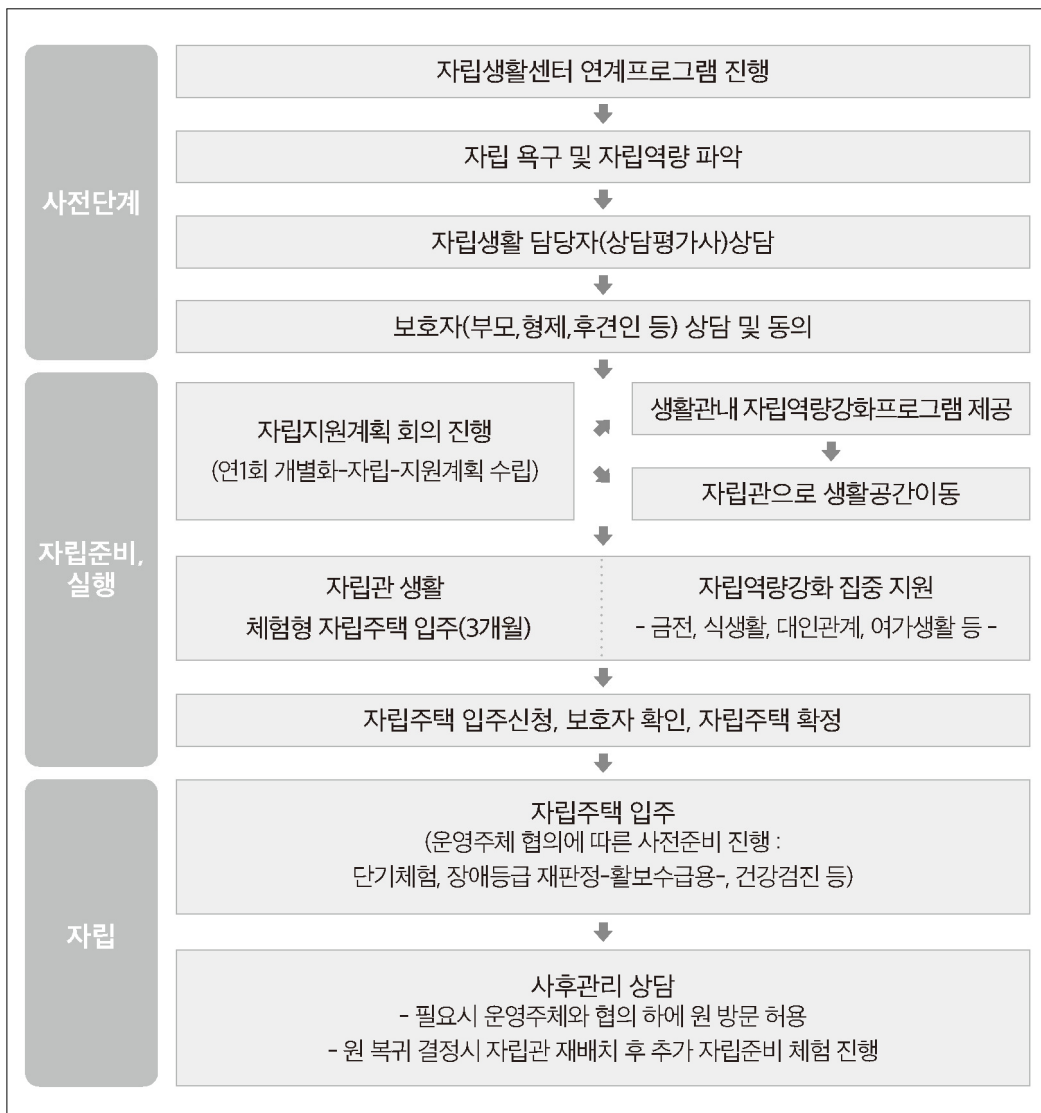
■ 시설내 탈시설-자립 개념 정리 : “개별적 삶”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로의 거주지 전환

■ 중단기 계획 수립에 의한 점진적 추진으로 탈시설-자립 인식 개선

- 거주인 당사자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역량 강화
- 보호자 대상 자립생활 이해도 향상을 위한 탈시설 정책 안내 교육
- 종사자의 탈시설-자립 이해와 이후 종사자의 역할 재정립 논의 및 교육

■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추진 계획 적극 참여

2) 시설내 탈시설-자립지원 진행 과정



### 3) 탈시설-자립 준비 및 추진방법

---

---

## 거 주 인

---

---

### ■ 개인별 지원계획에 의한 자립욕구 파악 및 자립지원방향 수립

- 자립관 생활
- 자립생활센터 연계  
(2019년 2개 센터 8명/2018년 5개 센터 21명/2017년 4개 센터 19명/2016년 1개 센터 19명)
- 서울시 “체험형 자립주택” 입주에 의한 자립주택 체험  
(2019년 6명, 2018년 4명)
-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활동 강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이용 (문화여가활동 등)
  - 낮활동- 평생교육-연계  
(노들야간학교 “발달장애인 낮활동”참여 - 2019년 8명, 2018년 11명)
  - 개인 외출지원 활동지원사 연결 (총 9명 /활동지원사 시급 거주인 개인부담)
- 선 탈시설-자립 거주인 연계활동
  - 시설 방문 (명절 등 자립거주인이 원할시 수시 방문)
  - 자조모임 구성 운영 : 지역별 모임 구성하여 자립주택 운영자업자별 교류  
자립주택 초대 및 방문 등
- 자립 후 2년간 사후지도 : 전담인력 배치
- 자립주택 운영 사업자와의 긴밀한 연계 소통 : 자립거주인별 지원방법 공유 및 과잉행동 대처방안 지원

---

---

## 보 호 자

---

---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보호자 자립 동의 확인, 이해정도에 따른 개별상담

- 장기간 연락 두절된 보호자 확인 및 개별방문 상담
- 보호자의 자립 이해정도에 대한 개별적 상담 (자립주택 방문, 생활자금계획 등)
-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설명회 및 개별적 안내
- 무연고자 공공후견인 신청

---



---

## 종 사 자

---



---

- 단계별 조직편성
  - 준비단계 : 자립추진 전담팀(자립지원팀) 구성 및 전담인력(상담평가사) 배치
  - 변환단계 : 별도의 자립추진 전담팀 폐지  
 생활지원팀 전체 지역사회 중심 거주전환 준비체계 운영
- 서울복지재단 및 협치사업단 종사자 교육, 간담회 참여
- 성년후견인제도 ,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한 공적부조제도 등 교육
- 거주인 개별지원 관련 전문교육 자체 진행
  - 긍정적 행동지원
  - Self Defence
  - 과잉행동 대처방법 및 사례회의
- 중간관리자 중심의 정책 공유

#### 4) 탈시설-자립 추진 결과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0	29	3	1	11	4	12 (지원주택11)

※ 원가정복귀 및 타시설(요양병원) 전원 : 8명

## 3

## 시설단위 탈시설 - 시설변환 시범사업진행

### 1) 추진배경 및 경과

- 서울시 2차 탈시설계획(2018~2022) 중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
- 법인이사회 결의(2019.06) : 거주인 지원주택으로의 이전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후 거주 시설 폐지. 기존시설물 활용한 신규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기관 운영
- 서울시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법인) : 2020.11

### 2) 변환사업의 필요성

- 시설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불가
  - 독립생활 보장이 불가능한 주거 환경 (1실 4~5인)
- 개인별 탈시설의 한계
  - 기존 자립주택 운영구조 및 예산,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탈시설 제약 (중증장애인 탈시설 불가능한 제도), 자립주택 입주기간 이후 완전한 지역사회 자립대책 부재
- 시설폐지(종사자 실직)에 대한 저항 최소화방안 필요

### 3) 변환사업 기본원칙

-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장애인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추진
- 거주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과정 참여 보장 (당사자 의견 중심, 거주인의 욕구와 서비스과정 중 표현된 욕구)
- 장애정도 및 유형, 연령 무관한 모든 거주인을 포함
- 기존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 기존시설을 완전히 폐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전환
- 기존 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창출

## 4

## 변환사업 진행과정 중 고려사항

### 1) 현재까지 진행경과

- 변환사업(변환모형) 타당성 연구 진행 중
-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 인강원- ” 실행방안 컨설팅 착수
- 지역사회 지원주택으로 이전 및 고용전환 (지원주택 1차 입주)

※ 지원주택 (발달장애인당사자명의 주택)입주인 변화 사례

- 가족관계 회복 : 2~3주 1회 자녀를 위한 반찬을 준비하여 방문  
 자타해 감소로 어머니가 함께 1박 함께 취침할 수 있는 상황
- 수면안정 : 시설생활 중 예민함으로 늦은시간까지 취침하지 못하고 새벽 일찍 깨어 생활실을 방황하던 장애인의 규칙적이고 안정된 수면상태 유지

### 2) 시설변환 진행 중 고려사항

- 현재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시스템의 불충분성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부족
  - 지역사회 최종증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부족
  - 활동지원서비스 인력의 최종증발달장애인 이해도 부족 및 지원 방법 혼란
  - 공급되는 지원주택의 부적합성
- 종사자 고용 관련
  - 100% 고용보장 가능한 신규 서비스기관 모형의 제한적
  - 고용전환 되는 기관의 종사자 처우 기준 상이
  - 인권감수성 낮은 종사자의 고용보장
  - 시설서비스 제공인력의 기존 업무역량
  - 변환과정 중 인력 운용 (인력감소에 따른 거주인 지원공백 우려)
- 신규서비스 기관 운영관련
  - 신규서비스 기관 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

- 특수상황 거주인 지원방안
  - 중국국적 (불법체류 상태) 거주인
  - 심각한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거주인
  - 경제능력 있는 보호자
- 전국 최초 거주시설 변환사업 - 시범기관 부담

## 토론

#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변화에 대한 고민과 제언

허미연(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장)

## 탈시설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

장영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 청암재단 거주시설 변환사업 계획안과 그에 따른 쟁점

강성봉(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사무국장)

##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박원식(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장)





#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변화에 대한 고민과 제언

허미연(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사무국장)

## 1. 발달장애인 현황 및 실태

### □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대구 발달장애인 추이(2011~2018)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체 장애인	117,183	116,839	116,567	115,983	115,694	117,111	119,766	123,070	0.70
발달 장애인	8,589	8,967	9,334	9,632	9,953	10,286	10,598	10,985	3.58

자료 : 보건복지부, 2011~2018, 「장애인현황」/2020 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주 : 증감률은 2011년 대비 2018년의 증감률을 의미

### □ 발달장애인은 매년 약 340명씩 증가

11년 →12년 : 378명, 12년 →13년 : 367명, 13년 →14년 : 298명, 14년 →15년 : 321명,  
 15년 →16년 : 333명, 16년 →17년 : 312명, 17년 →18년 : 387명.

### □ 발달장애인의 돌봄 필요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방안 연구」참조

- 발달장애인 중 80%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발달 장애인 41%는 일상생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중 58.7%가 외부활동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불편한 이유 중 동반자가 없어서가 46.2%를 차지함.

##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절대 부족

- 부족한 발달장애인 1:1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총(급여)량
  - 돌봄서비스는 만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총 급여량이 1년에 720시간(월 평균 60시간)밖에 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만 이용할 수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 이상 ~ 만64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발달장애인 월평균 총 급여량은 120시간 정도로 하루 4시간밖에 이용하지 못함
  - \*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조사표를 도입하여 장애인이 처한 환경과 필요를 고려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및 급여량을 판정한다고 하지만 종합조사표가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발달장애인 중 24시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최대급여량인 24시간을 제공받는 발달장애인은 단 한명도 없음.

## □ 여전히 높은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가족 지원 의존도

- 발달장애인 1:1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총(급여)량 및 집단적 낮시간 지원서비스 절대적 부족으로 부모나 가족이 발달장애인의 주 지원자가 될 수밖에 없음.
  - 발달장애인 중 부모나 가족에게 10시간 이상 지원을 받는 비율은 평일 40.6%, 주말 71.6%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특히, 저녁 및 야간 시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외 별도 지원체계가 전무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가족이 지원할 수밖에 없음
- 정부가 2018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나 가족에 의한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활동, 방과후활동)가 도입 되었지만 그 대상 인원과 제공시간이 부족하여 여전히 부모나 가족에 의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미비

-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 상 65% 이상이 의사소통 시 지원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이 의사결정 시 일정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현재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통한 언어치료서비스 이외 전무한 상태이며, 발달재활서비스도 만 20세이하만 이용 가능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은 이용서비스가 없는 상태임.
- 반면에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선호도를 최대로 고려해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후견인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발달장애인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며 특정 영역에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또한 이는 의사결정의 지원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리 의사 결정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함.

## □ 발달장애인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부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서비스를 연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연계에 있어 여러 한계점이 있음.
- 현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제공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제공기관을 연계할 권한이 거의 없음. 또한 지역 발달 장애인지원센터가 그나마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인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는 전자바우처 간 변동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12년간의 학령기간동안 발달장애인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환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지원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

- 결국, 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정부 주도’ 지원체계라기 보다는 ‘가족 주도’ 지원 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나 가족의 지원 없이 발달장애인은 결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 평생을 부모나 가족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

- 성인기 발달장애인 중 부모나 가족과 동거하는 발달장애인은 90.1%로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자립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발달장애인 82.5%(지적장애 78.9%, 자폐성장애 86.0%)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85.7%(지적장애 72.8%, 자폐성장애 98.5%)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
  - 발달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16.78만원이지만 개인소득은 42.03만원(근로소득 18.78만원)으로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발달장애인 77.1%(지적장애 66.8, 자폐성장애 87.4%)가 부모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
  - 자립을 하고 싶은 발달장애인 중 47.1%가 혼자 살고 싶어 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64.7%의 발달장애인이 주거지원을 꼽았음.
  -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재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지원 부족, 소득 부족, 주거 지원 부족으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자립하여 생활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자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주거 지원임을 알 수 있음.

## □ 발달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요원한 공공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가구에게 공급된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03년 이후 공급된 9만 6천호의 공공임대 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된 물량은 319호로 전체 공급량의 0.3%에 불과함(강미나 외, 2010)

- 공공임대주택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낮은 소득에 비해 임차료 부담이 매우 높아 일반 주택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함

## 2. 발달장애인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및 정책 제안

###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도모를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지원주거 생활의 경우 다양한 인력이 주거시설에 투입, 지원되어야 하고 발달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주거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탈시설전환센터 등과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생활 지원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는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주택 및 주거 환경 실태조사,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만 담당, 물리적 지원에만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인력이 돌봄, 교육 등이 함께 지원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타시도 사례 (서울 주거생활지원센터) 20년 시범사업 실시

- 별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생활지원센터(충현복지관 운영)를 운영하고 있고, 탈시설 전환센터와 같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 생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 운영 중
- ‘체험형 지원주택’사업은 보호자로부터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독립주거생활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며 지역사회 내 주거생활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생활방식을 형성, 학습하고 주택마련과 개인별 주거지원 계획 수립을 지원

-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서비스는 2017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 4월부터 서울시의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성인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내 안정된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가지고 자기결정권과 선택에 의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장애특성 및 필요한 지원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 발달장애인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 수립

- 독립 주거 또는 지원 주거 형태로의 지역사회에서 주거 생활을 하려는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한 주택 임차료 지원 및 주택 확보 방안 필요

## □ 발달장애인 1일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종합조사표 개편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가 필요하며, 일상에서의 주거생활지원, 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낮생활을 보장하며, 낮 시간 이용 서비스의 개편, 확대가 필요

### ※ 타시도 사례 (광주 발달장애인 융복합지원센터)

- 분산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발달장애인 융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관련지원사업(가족휴식, 부모심리상담, 자조모임 등), 주말 휴일 1:1 돌봄 서비스, 1:1 주간활동서비스, 긴급돌봄지원, 주거체험, 주거모델지원주택, 주간활동다중 지원(행동발달 증진기능)의 7가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하나로 융합시켜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일대일 365일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발달장애인의 선택권 등의 권리가 보장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전환

## □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의사,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등이 참여한 각종 회의(치료지원 회의·사례 회의 등)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찰 및 보호자 면담 등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업무 수행
-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센터 내 설치될 시설(관찰실·치료실 등)을 활용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언어·인지·행동문제 등 관련 데이터구축 및 긍정적 행동 지원필요

## 3. 발달장애인의 지역 정착지원을 통한 탈시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인지 문제, 도전적 행동 표출 심화 등으로 평생 돌봄이 필요하나 학령기 이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인프라 부재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가족의 위기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몇 년간 돌봄의 가중으로 인한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돌봄의 고통 ‘중증장애 아들과 어머니 극단적 선택-제주, 광주 60대 어머니 고독사 방치 장애아들 노숙생활사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과 지원을 ‘가족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 주도’로의 전환이 필요
- 국가책임성 강화와 ‘지역사회 주도’의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보와 기존 거주시설 변환 사업이 동반되어야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탈시설을 꾀할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함



# 탈시설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입장

장영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2005년, 우리는 족벌체제와 비리의 온상이었고 극심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던 당시 재단을 몰아내고 이용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노동조합, 장애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을 벌였고, 승리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재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장애단체와 노동조합, 이용인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했고 그 이사회는 재단 산하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용인을 중심에 두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우리가 투쟁으로 몰아낸 비리재단이 시설을 운영하던 때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이는 이용인의 인권을 그 중심에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그 횡수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재단 민주화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단 운영진이나 시설노동자들의 인권의식 부재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일부 사건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본질적인 원인은 시설 그 자체에 있다.

## 시설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

시설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시설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용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서 최대의 노력을

하더라도 ‘시설’의 이용인은 타인의 관리와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민은 이 점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용인의 인권은 시설 운영자의 선의로 보장되지 않는다. 시설은 이용인은 스스로에 대한 보호자, 감독자 그리고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타인의 보호 아래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시설의 존재는 이용인의 주체성을 부정한다는 강력한 증거다.

## 노동조합은 고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탈시설과 시설 노동자의 고용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가. 이 질문은 노동조합의 성격상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답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청암재단이 처음 탈시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당시, ‘탈시설과 시설 노동자의 고용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탈시설의 한 주체가 되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면서 진행되는 탈시설은 힘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시설과 고용이라는 두 측면은 상호보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현재도 당연히 유효하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인을 시설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한다.

이미 청암재단 산하 시설 이용인의 신규입소는 중단된지 오래이며, 현재도 시설 노동자가 정원을 초과했고 이용인의 자연적 감소로 인해 시설 노동자의 과원이라는 상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고용의 유지를 위해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시설 이용인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하고 시설 이용인의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만 매몰될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용인에 따라 필요인력의 소요도 줄어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고, 이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불안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형태를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탈시설을 주도해야 한다.

## 탈시설과 고용유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설 노동자의 고용유지는 시설이 유지되어야만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용인의 수는 시설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속화 시킬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오히려 탈시설과 시설전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합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핵심 중 하나는 탈시설과 시설전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일자리에 조합원들의 고용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은 노동조합이 청암재단, 장애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탈시설과 병행하는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미 청암재단은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 노동자의 고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일부 시설전환에 따른 고용전환을 현실화 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청암재단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신뢰하며 고용유지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탈시설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만이 고용안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와 같은 시설 유지에 매몰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고용이 더욱 불안해 질 것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탈시설이 이용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며, 시설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므로 탈시설을 지지한다.

# 청암재단 거주시설 변환사업 계획안과 그에 따른 쟁점

강성봉(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사무국장)

## I. 들어가며

- 청암재단은 2015년 전국 최초 재단 공공화 및 탈시설화 선언 이후 지난 5년간 탈시설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설 이용인이 최대한 빨리 지역사회로 나가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옴
- 그러나 지난 5년을 돌아해보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시설법인 혼자 하기엔 너무 버거운 사업이란 것을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었음.
- 이에 우리 청암재단은 지난 2018년 4월 “청암재단 공공화 및 거주시설 폐지” 선언을 통해 탈시설-자립 정책을 더욱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함
- 그러나 이 또한 당시 대구시의 거부로 무산되고, 또한 희망원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탈시설 이용인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탈시설-자립 사업의 정체기를 맞이함
- 2021년 제 1차 이사회(3월 23일)를 통해 2025년 말까지 청암재단 거주시설(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2개소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통해 시설운영 폐지 의결함

**청암재단 “탈시설-자립 지원을 넘어  
거주시설 폐지-기능전환 사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간다.**

- 2015년 전국 최초 재단 공공화 및 탈시설화 선언
- 2016년 자체 예산으로 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상담 진행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재활원 24명, 천혜요양원 6명 총 30명 탈시설-자립 지원
- 2018년 4월 17일 청암재단 공공화 및 거주시설 폐지 선언

- 2020년 청암재단 거주시설 폐지에 따른 기능전환 사업으로 도전전 행동 발달장애인 낮 생활지원센터 신규사업(이용시설) 시작/지역사회 법인 체험홈 4개소로 확대 운영
- 2021년 제1차 이사회(3.24)를 통해 2025년 말까지 대구시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통해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거주시설 운영 폐지를 의결

## II. 청암재단 거주시설 변환사업 계획안

### 1. 추진배경

#### (1) 탈시설 제도화 강화(국가인권위 권고 및 탈시설지원법 발의)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정부에 탈시설 정책 권고
-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2026년 보편화)
- 2020년, 최혜영 장혜영 의원 등, 탈시설 지원법 발의
- 2021년 중앙정부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설립 예정

#### (2) 국제인권기준 이행 주문(UN 장애인권리협약)

-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장애인 인권 모델에 기반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주문

#### (3)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대구시 탈시설 추진계획 실시)

-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 지자체 계획 수립
- 2015~2019, 대구시 1차 탈시설 추진
- 2018,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시설 폐지
- 131명 탈시설 지원, 자립생활주택 61개소 운영
- 기존 거주시설의 구조적 변환 필요성 도출

#### (4) 장애인의 요구(자립생활운동 활성화)

-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장애 운동의 화두
- 시설보호, 재활 자립 생활 패러다임 전환
- 장애인 당사자 권리 중심의 제도 신설/개편  
(교통약자법, 활동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요구 확산

## 2. 추진경과

### (1) 연도별 추진경과보고



## 3. 이용인 및 종사자 현황

### (1) 현재 인원

#### 가. 연령별

	35세 이하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5세 이상	합 계
청구재활원	2	5	13	16	19	20	22	16	113
천혜요양원	3	3	3	4	6	0	3	4	26
합 계	5	8	16	20	25	20	25	20	139

#### 나. 성별

	남자	여자	합 계
청구재활원	97	16	113
천혜요양원	26	0	26
합 계	123	16	139

다. 장애 유형별

	지적	지체	정신	시각	기타	합 계
청구재활원	101	8	1	1	2 (청각1,뇌병변1)	113
천혜요양원	21	1	0	1	3	26
합 계	122	9	1	1	5	139

라. 연고자유무

	유	무	합 계
청구재활원	96	17	113
천혜요양원	16	10	26
합 계	112	27	139

마. 입원 이용인 현황

	1년 이하	1년 이상	합 계
청구재활원	1	10	11
천혜요양원	1	1	2
합 계	2	11	13

(2) 퇴소자 현황

가. 퇴소자 유형

		자립퇴소	원 가정퇴소	사망퇴소	기 타	합 계
청구재활원	2015	0	0	2	0	2
	2016	10	2	4	1(전원)	17
	2017	7	2	0	0	9
	2018	1	0	3	1(전원)	5
	2019	2	0	2	0	4
	2020	0	1	2	0	3
	2021	4	0	1	0	5
						45

		자립퇴소	원 가정퇴소	사망퇴소	기 타	합 계	
천혜요양원	2015	0	0	1	0	1	13
	2016	1	0	1	0	2	
	2017	2	0	0	0	2	
	2018	0	0	4	0	4	
	2019	2	0	0	0	2	
	2020	1	0	1	0	2	
	2021	0	0	0	0	0	
합 계		30	5	21	2	58	

#### 나. 탈시설-자립 퇴소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청구재활원	0	10	7	1	2	0	4	24
천혜요양원	0	1	2	0	2	1	0	6
합 계	0	11	9	1	4	1	4	30

#### (3) 종사자 현황

	원장	사무 국장	사회 재활 교사	생활 재활 교사	사 무 원	물리 치료 사	간 호 사	영 양 사	조 리 원	운 전 원	안전 관리 기사	위 생 원	촉 탁 의	합계
청구	-	1	1	55 (정45)	1	1	1	1	3 (정2)	2	1	1	-	68 (정57)
천혜	1	1	1	15	1	1	1	0	2 (정1)	1 (정0)	1	1	-	26 (정24)
합계	1	2	2	70 (정60)	2	2	2	1	5 (정3)	3 (정2)	1	1	-	94 (정81)



## 4. 사업개요

### (1) 사업 기간:

- 2021년 1월~2025년 12월(5년간)

### (2) 사업추진 방향:

- 1) 탈시설-시설폐지-기능전환 사업을 통해 시설 장애인 대상사업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사업으로 전환
- 2) 청암재단 발전 특별위원회 정식 기구 출범
  - 세부실행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권한 부여
- 3) 탈시설-시설폐지-기능전환 사업추진은 2025년까지 완료
  - 기능전환 사업은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운영기관)으로 기능전환요구 (단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한 기능전환 사업 방향 검토 가능)
  -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안 마련 포함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중단
- 4) 종사자 고용보장 방안 마련
  - 기능전환 신규사업의 경우 종사자 교육 및 재취업 훈련 이수 필수
  - 종사자 고용 승계 처우의 경우 보건복지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 준수
  - 특수직의 경우 별도 대책 마련 필요
- 5) 위 사업추진 방향은 대구시 2차 탈시설 계획에 따른 거주시설 변환사업 참여하여 추진

### (3) 사업 세부실행 방향과 원칙

- 1) 청암재단 발전특별위원회 운영
  - ① 위원장 : 대표이사
  - ② 집행위원장 : 법인 사무국장(내부 탈시설 TF 팀장)
  - ③ 위원: 이사, 장애인단체, 노동조합 시설 종사자로 구성

④ 역할:

- 변환사업 관련 의사결정기구(대구시 추진단 연계)
- 변환사업 추진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결정

⑤ 운영방식: 월 1회 이상 상시운영

**2) 청암재단 (내부) 탈시설 TF팀 운영**

① 팀장: 법인 사무국장

② 간사: 통합 체험홈 부팀장

③ 위원: 통합 체험홈, 자립홈, 타 시설 담당, 사회사업팀 등으로 구성

④ 역할:

- 탈시설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전반 계획 수립 및 발전특위 제출
- 전체 이용인 대상 전수조사/ 관련 자료수집, 홍보, 기획사업 총괄

⑤ 운영방식: 격주 1회 이상 상시운영

**3) 탈시설 지원 목표 및 기준**

① 2021년~2025년간 최소 55명 이상 탈시설 지원

② 연령 및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탈시설 지원 원칙

- 65세 이상 이용인 및 도래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③ 탈시설 지원 상황별 원칙(당사자 의사 기준 원칙, 연고자는 설명/설득)

- 본인 의사 + 탈시설 요구 : 자립 지원
- 본인 의사 미확인 : 자립 지원
- 본인 의사 + 시설서비스 유지 : 정보제공 및 교육이 우선, 전원 검토 등

**4) 종사자 고용보장**

① 고용 승계 대상: 총 81명(청구재활원 57명, 천혜요양원 24명)

② 변환사업 추진 기간 내 자연 퇴사에 따른 정규직 신규채용 불가

③ 대구시 변환사업을 통해 기능전환 및 고용 승계(교육 및 재취업 훈련 등 이수)

④ 최소 현행 거주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 이상 준수(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의 경우 신규사업 내용에 따름)

⑤ 이외 근로조건 등 문제는 추후 협의 및 공동대응

#### 5) 지원주택(운영기관)으로 기능전환

- ①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기능전환
  - 서울시 인강원, 프리웰, 엔젤스헤이븐 등 사례 참조=>강화
- ② 청암재단의 변환사업을 통해 지역의 지원주택 제도화 촉진
- ③ 기존 시설 이용자에 대한 탈시설은 시설 종사자 수의 고용과 무관  
(지원주택의 입주민은 시설 거주민, 지역 장애인 모두 포함)

### 4. 예상과제 및 쟁점

#### (1) 지원주택 제도화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구조화

- 1) 대구시의 경우, 서울시와 달리 '지원주택 조례' 미제정->지원근거 마련 필요  
(LH, 대구도시공사, 대구시 대상 지원주택 공급,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확보)
- 2)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과 같은 표준화된 대구시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2) 노인, 중증 이용인 지역사회 거주공간 이전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 필요

- 1)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서비스 지원방안 등 별도의 대책 마련
- 2)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주택 모델 마련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3) 종사자 고용 승계에 대한 대책 마련

- 1)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 이전 대책이 필요
  -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으로의 고용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 이용시설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고용 승계 대책이 필요
  - 거주시설 운영 특성상 시간 외 수당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예시: 보건복지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하되 인건비 격차 해소를 위해 이용시설 호봉표 3급 적용)
- 2) 특수직(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시설과 등)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

### III. 마무리하며

- 우리 청암재단은 2004년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 비리 투쟁을 통해 공익이사로 재단을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부끄럽게도 15년이 지난 지금 청암재단의 탈시설-자립 지원 정책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공익적 책임과 역할을 얼마만큼 했는가? 에 대해 반성의 평가를 함
- 이에 우리 청암재단은 현재 이 시점이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탈시설-거주시설 폐지-기능전환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
- 청암재단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청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공공화는 물론 시설 장애인이 하루라도 빨리 평등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탈시설-자립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내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갈 예정

## 제2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박원식(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장)



## 탈(脫) 시설이란?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개인주택에 거주하며 자율적으로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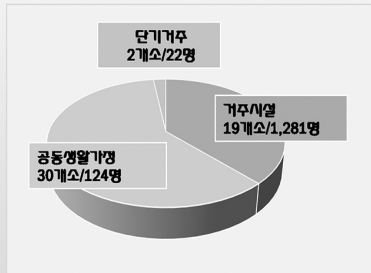
### 목 차



01	▶ 장애인 거주시설 연왕
02	▶ 추진배경 및 근거
03	▶ 추진경과
04	▶ 사업개요
05	▶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06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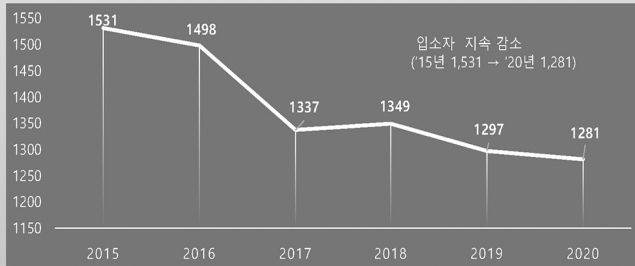
# 1.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거주시설 수



지혜	지적	중증	영유아
(2개소)	(7개소)	(9개소)	(1개소)

## 연도별 거주인 수



# 2. 추진배경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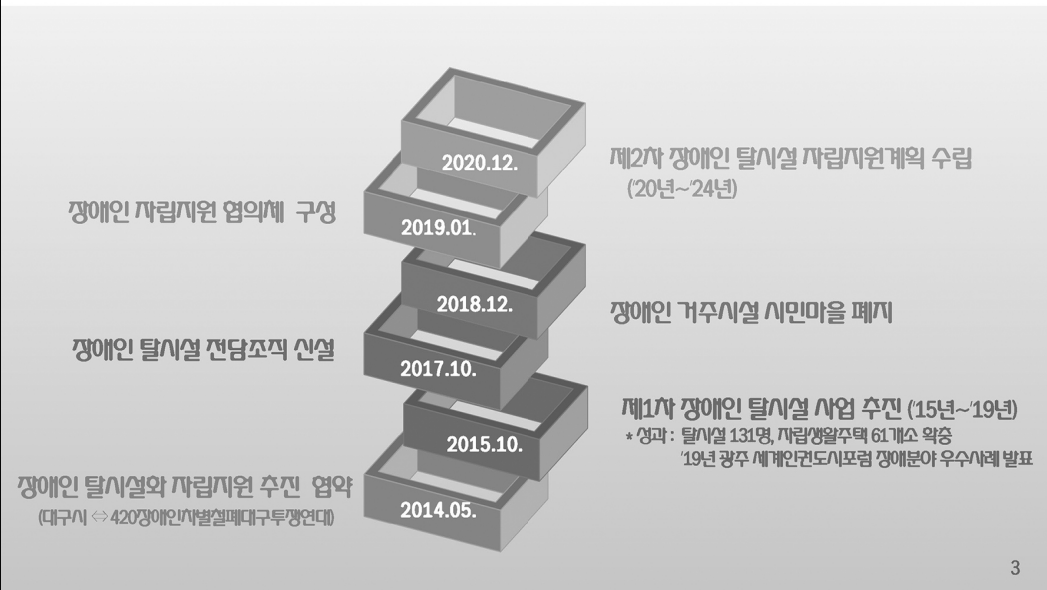
## 추진배경

1.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기
2. 시설거주자 중 57%가 시설 밖 생활 의망 ('12년 국가인권위 조사)
3.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시설보호에서 사회참여로 변화
4. 인권보장을 위한사회적 요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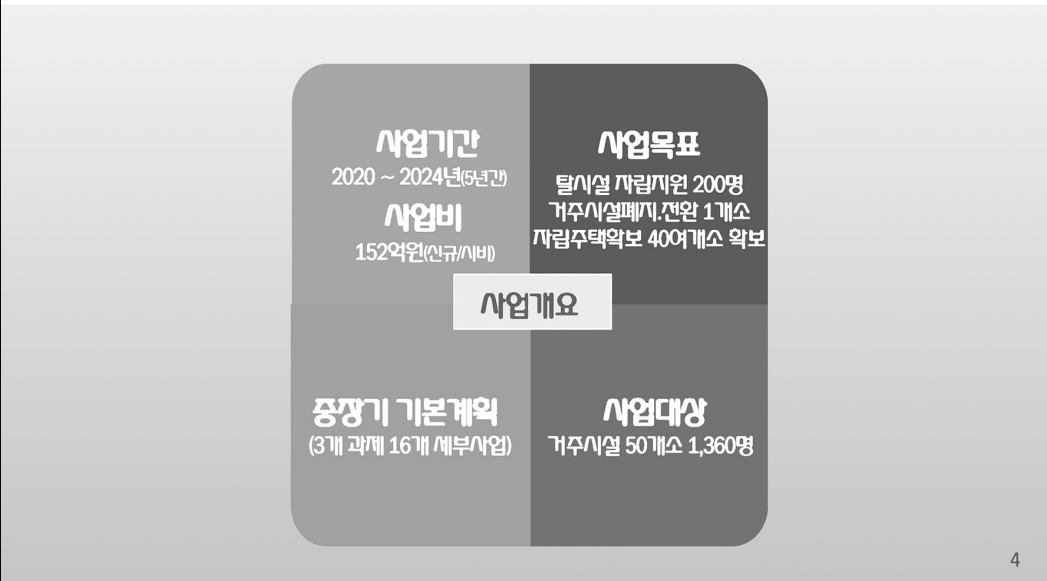
## 추진근거

1. 장애인복지법
2.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3. 대통령 공약 사항 및 100대 국정 과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 환경 조성)
4. 민선 6,7기 대구광역시장 공약사항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책 지원)

### 3. 추진경과



### 4. 사업개요





## 5.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1-1 탈시설 자립지원업종의 운영 (2차계획 자금, 수진상황 점검)

1-2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1개소/탈시설 대상자 발굴, 정착 지원)

1-3 자립생활주택 확보 (현재 61개 → 100개)

1-4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메뉴얼 개발 및 전문교육 강화

1-5 탈시설 장애인 자원체계(IL센터) 강화  
(7개 IL센터 전문성 강화 및 특영양)

## 5.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2-1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탈시설 초기 적응을 위한 복귀서비스 신속 제공 및 지역내 자립 지원)

2-2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으로 시설재입소 예방)

2-3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월 40~60시간 좌강 3년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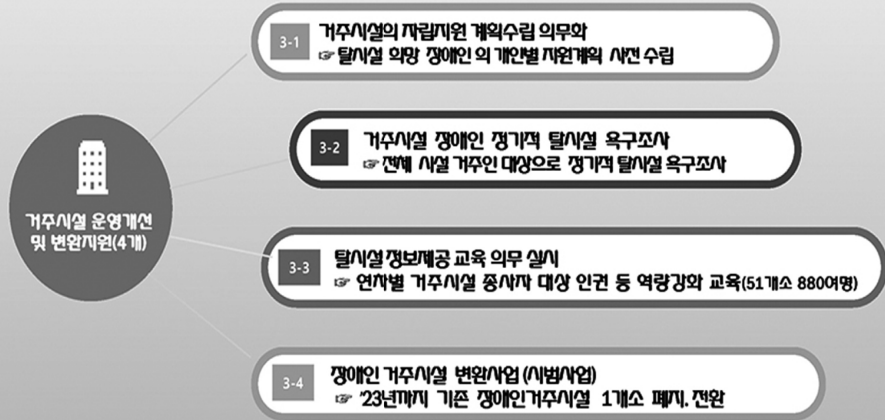
2-4 중증장애인 지역사의 이용시설 확대  
(중증 장애인 중 낮 활동 의량자에게 이용시설 확대)

2-5 탈시설 장애인 자립장학금 지원 확대(1천만원)

2-6 탈시설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영계 관련자에게 생계비 및 일자리 지원: 연 10명)

2-7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시민들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인식개선 교육:용보)

## 5.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 6. 추진일정



2021	2022	2023	2024
탈시설자립지원협의회 구성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시설 폐지, 전환 1개소	- 탈 시설 자립지원 200명 달성(누계) -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보(누계)
자립생활주택 2개소 확충	자립생활주택 13개소 확충	자립생활주택 13개소확충	자립생활주택 13개소 확충
IL센터운영 공동매뉴얼 마련	IL센터 사업평가 체계구축	IL센터 사업 평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월40H) 지역사의 이용시설 확대 (2개소)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월50H)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월50H) 지역사의 이용시설 확대 (1개소)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월60H) 지역사의 이용시설 확대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변형 시범사업 계획수립/공모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조사용역)		제3차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계획수립(2개사업종류)



---

탈시설 흐름 속,  
장애인거주시설의 변화, 도전과 과제

---

| 인 쇄 | 2021년 4월 28일  
| 발 행 | 2020년 4월 28일  
| 발행인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 주 소 |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5층  
| 전 화 | (053)212-7000  
| 웹사이트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디자인모장  
| 전 화 | (02) 2278-1990 | F A X | (02) 2278-1992

---

ISBN 978-89-6114-826-9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동인동2가 50-3번지) 호수빌딩 15층  
Tel : (053)212-7000, Fax : (053)212-7007

ISBN 978-89-6114-826-9 93330